

관교택지개발지구 C1-2블럭 주상복합 푸르지오월드마크 임차인 모집공고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본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주택전시관 내 현장 접수를 원칙으로 하오니, 현장접수 일자 및 주택전시관 위치를 미리 확인하시어 청약 당일의 혼선을 미연에 방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 본 임차인모집공고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신청자격 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신청하여야 하며, 당첨 후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순위별(제1·2·3순위) 신청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임차인모집공고문의 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청약자격(신청순위 및 거주지역 여부 등)은 당첨자에 한해 계약 체결시 확인하며, 확인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당첨시 계약불가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어 청약자격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재당첨 제한 및 당첨자에 대한 전산관리 대상이 아니며, 청약통장은 본 아파트에 당첨되더라도 소멸되지 않고 단순히 임차인의 선정기준으로만 사용됩니다.
- 주택공급 면적의 표기방법 변경
2009년 4월 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 사이버 모델하우스 관련
청약자의 편의를 위해 사이버모델하우스(http://www.prugio.com/HOME/2011/pangyo_prugioworldmark)를 운영하오니 직접 방문하지 않으셔도 견본주택 관람이 가능합니다.
단, 사이버모델하우스만을 관람하고 청약 시 경우에 따라서 판단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기간 동안 주택전시관을 방문해 확인하여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청약자의 착오에 따른 불이익 발생시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남시 건축과 - 1129호(2011.1.26)로 임차인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741번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4층, 지상 20층 2개동 총14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대지면적 11,733.70㎡ 중 아파트 지분 7,822.47㎡ / 상가 지분 3,911.23㎡ - 금회분양 제외)
-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단위: 면적-㎡, 금액-천원)

구분	아파트 코드 및 주택관리 번호(모델번호)	주택형 (㎡) (주거전용 면적기준)	세대별 계약면적(㎡)						세대당 대지면적 (㎡)	층별	공급 세대수	임대 보증금	계약금 (20%)	중도금			잔금(40%) (입주지정일)	월임대료
			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 주차장	계약면적						1회(14%)	2회(13%)	3회(13%)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2012.4.20	2012.8.20	2012.12.20		
민영 주택 (민간 건설 임대 주택)	2011-00047(01)	134.3300	134.330	34.330	168.660	3.840	106.550	279.050	56.5237	3~20층	70	695,000	139,000	97,300	90,350	90,350	278,000	1,670
	2011-00047(02)	127.6000 A	127.600	32.750	160.350	3.650	101.210	265.210	53.6918	3~20층	70	694,000	138,800	97,160	90,220	90,220	277,600	1,630
	2011-00047(03)	127.6000 B	127.600	32.490	160.090	3.645	101.215	264.950	53.6925	3층	2	693,000	138,600	97,020	90,090	90,090	277,200	1,630

- 본 주택은 사업시행자의 재정으로 건설되는 민간건설 임대주택임
- 상기 주택형별 공급조건은 당사에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함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기타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음
- 상기 세대별 대지면적은 대지공급 당시의 면적에 의하여 주거부와 비주거부에 대한 대지비율을 안분하여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음
- 중도금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하여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 받을 수 있음(이때 중도금 납입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가 확인한 건축공정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잔금은 주택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납부 할 수 있으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입주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登記면적이 상이 할 수 있음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기간의 임대조건으로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타입별, 층별 일부 차등이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자세한 확장부위는 사이버견본주택 및 안내물을 참고하시기 바람)
- 최초 임차인 모집공고일 : 2011. 2. 9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 의무기간 : 5년
- 임대조건변경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에 의거 매년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음
- 분양전환 조건
 - 분양전환 시기 :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로부터 5년 경과 후 가능함
(단,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임대무기간의 1/2 경과 후 임차인과 합의하여 분양전환 가능함)
 - 분양전환대상자 : 임대주택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분양전환 당시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분양전환금 : 분양전환금(발코니 확장비용 포함)의 산정은 복수의 감정평가기관에서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조정된 금액임

(단위 : 천원)

주택형(㎡)	층	분양전환금액	비고
134.3300	3층	1,069,000	
	4~5층	1,059,000	
	6~20층	1,069,000	
127.6000 A	3층	1,055,000	
	4~5층	1,045,000	
	6~20층	1,055,000	
127.6000 B	3층	1,055,000	

- 분양 전환 시 당해 주택에 대한 보수, 수선의 범위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함

■ 신청자격

- 최초 임차인모집공고일(2011. 2. 9)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또는 만 20세 이상인[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수도권 이외의 거주자는 신청할 수 없음(당첨시 계약불가 등)
- ※ 지역별 · 순위별 신청자격 제한이 있으므로 아래 '순위별 자격요건'에서 본인의 '신청순위'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시 당첨자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청 모두를 무효 처리함

■ 신청순위

구분	순위	적용주택형	순위별 자격요건
민영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	1순위	전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 후 신청일 현재 1년이 경과한 자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순위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납입인정금액 범위 내에서 최초 임차인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2순위	전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 인정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3순위	전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동일 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

- 성남판교지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서, 본 주택은 아래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각 주택형별 · 지역별로 세대수를 비율 배분하여 공급함
- 각 주택형별 · 지역별 청약자 수가 신청지역(성남시, 경기도, 수도권) 공급세대수에 미달 할 경우 미달된 세대는 후순위 청약자에게 공급함
[※ 각 주택형별 · 지역별 낙첨자 발생 시에도 낙첨자를 위 순서에 따라 이월하여 해당 지역(경기도 또는 수도권) 청약자에 포함하여 임차인 선정함]

임차인모집공고일	지역우선 거주기간 및 우선공급비율		
	성남시(1년 이상) - 30%	경기도(6개월 이상) - 20%	수도권(공고일 현재) - 50%
2011. 2. 9	2010. 2. 9 이전부터 계속거주	2010. 8. 9 이전부터 계속거주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거주

- ※ 공급물량을 상기 지역 우선 비율로 배분 시 소수점 이하가 발생 할 경우 소수점 첫 자리에서 반올림 함
- ※ 2010. 2. 9 이후 성남시 전입자 및 2010. 8. 9 이후 경기도 전입자는 직전 거주지(경기도 또는 수도권) 거주자로 분류됨
- ※ 경기도 거주기간 산정 시 경기도 내 시·군 사이에서 전입·전출한 경우 합산 가능
- ※ 127.6000 B 주택형(2세대)은 성남 1세대, 경기도와 수도권이 합하여 1세대가 공급 됨

■ 거주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거주지역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주택의 전용면적 102㎡ 초과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 청약접수 일정 및 장소

구분	순위	거주구분	접수일자	접수장소 및 시간	당첨자 발표
민영 주택 (민간 건설 임대 주택)	1순위	성남시/ 경기 / 수도권	2011. 2. 14(월)	* 접수장소 : 당사 주택전시관 * 접수시간 : 09:00~18:00	* 일시 : 2011. 2. 18 (금) * 장소 : 판교 푸르지오월드마크 주택전시관 및 홈페이지(http://www.prugio.com/HOME/2011/pangyo_prugioworldmark)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 서면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 문의는 대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순위	성남시/ 경기 / 수도권	2011. 2. 15(화)		
	3순위	성남시/ 경기 / 수도권	2011. 2. 16(수)	* 접수장소 : 당사 주택전시관 * 접수시간 : 09:00~16:00	

- 신청접수는 주택전시관 내 현장에서 접수하며, 인터넷 청약을 받지 않음
- 주택공급신청은 주택형태로 구분 접수함
- 주택의 동호는 주택형태로 동별, 층별, 호수별 순위 구분 없이 금융결제원 컴퓨터로 일괄 추첨함
- 신청접수 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신청순위, 거주지역 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시기 바라며, 확인 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계약불가 등 불이익을 받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니 임차인모집공고상 청약자격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람

■ 청약시 구비사항

구비사항

- 주택 공급신청서(당사 주택전시관 구비)
 - 인장
- 본인 확인 및 신청자격 확인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초본 1통
- 순위 확인서류
 - 청약통장순위확인서(청약 통장가입은행 창구 및 아파트 투유, 국민은행 홈페이지 발급)

※ 대리접수방법

- 배우자 대리신청 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 구비
(동일세대 구성 시 : 주민등록등본 1부, 분리세대 구성 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제3자 대리신청 시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하고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부,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 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 위임장 1부(양식은 신청장소에 비치)
 -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청약통장 전환(변경)에 관한 사항

- 아래의 경우 청약통장종류 및 금액 변경 가능함
 - 청약저축가입자가 납입인정금액 범위 안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85㎡이하 주택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하여 1순위가 된 후 청약예금으로 변경하는 경우
 - 청약예금가입자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함에 따라 그 예치금액의 차액을 예치하거나 인출하는 경우
 - 청약예금가입자가 가입일로부터 2년(청약저축 또는 청약부금을 청약예금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2년) 경과 시마다 신청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를 변경한 경우
- 청약통장 전환(변경)자의 신청요건

해당자	신청요건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최초 임차인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청약예금 가입 후 거주지역이 변경된 자	신청 전에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거주 지역에 해당하는 예치금액으로 차액을 추가 예치 후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해야 하는 경우 변경할 필요 없음
청약예금의 청약가능 전용면적을 변경한 자	작은 규모로 변경시 : 최초 임차인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변경후 면적으로만 신청가능 큰 규모로 변경시 : 신청일 현재 변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자는 변경 후 면적으로만 신청가능 단, 1년 미만인 자는 변경 전 면적으로만 신청가능

-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최초 청약 전까지 신청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를 선택하여 정하여야 함
(단, 신청가능 주택규모를 선택한 이후에는 2년이 경과하여야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이 가능함)

■ 신청접수방법

- 주택형태로 성남시 1년 이상 거주자 ·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 수도권 거주자를 구분하여 각 순위별로 같은 날짜에 접수함
-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각 주택형태 일반 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된 주택 형에 한해 익일 차순위 청약접수 받으며, 3순위까지 청약 접수한 결과 신청자 수가 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더라도 익일 접수치 않음

■ 3순위 청약신청금

- 납부

주택형	청약신청금	신청금 납부방법
전 주택형	3,000만원	- 주택전시관 현장 접수 - 가능한 한 수도권지역 소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1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구비서류 : 신분증, 환불가능한 예금계좌 사본

▪ 환불

-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 이후 [2011.2.21(월)부터 환불가능, 평일 09:00~16:00](단,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환불방법 : 청약시 제출한 예금계좌로 자동이체됨(청약자 본인의 서류 미비로 환불이 되지 않는 경우, 책임은 청약자에게 있음)

- 당첨자의 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아니하며, 청약 접수한 신한은행 본·지점에서 환불받아 계약 체결시 계약금을 별도 납부 하여야 함
- 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치 않음

▣ 임차인(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 금융결제원 컴퓨터 추첨에 의해 임차인(입주자)을 선정하여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 예비당첨자에 대한 사항

-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당사 주택전시관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함(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일체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정당당첨자의 계약체결 기간 이후 발생한 미계약 세대 및 계약취소 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할 계획이며, 일정 등은 별도 통보함
- 임차인 선정 시 주택형별 전체 세대수의 20%까지 예비당첨자를 선정하며,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등의 사유발생시 예비임차인 순번에 따라 임차인을 선정함(각 주택형별 신청자 수가 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예비당첨자로 선정함)
- 본 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임차인을 선정함

▣ 중복당첨시 처리기준

- 1인 2건 이상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되며, 당첨자 대상에서 제외됨
- 동일세대 내에서 신청자 본인, 배우자 및 세대원이 각자 다른 통장으로 중복청약이 가능

▣ 인터넷 당첨자 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구분		금융결제원
인터넷	이용방법	금융결제원 홈페이지(http://www.ap2you.com)에 접속 -> 당첨사실조회 -> 조합주택 동호수 추첨결과 조회 -> 당첨명단게시
	이용기간	당첨일로부터 7일간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기간 : 2011. 2. 21(월) ~ 2011. 2. 23(수) (3일간, 시간 09:30~16:00)
- 계약체결장소 : 당사 판교 푸르지오 월드마크 주택전시관
- 계약금 납부 : 아래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여부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 계약금, 임대보증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임대보증금 납부계좌	신한은행	140-009-063559	한국자산신탁(주)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신한은행 본, 지점 무통장 입금(타행 입금 불가)하시기 바람,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임대보증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대한주택보증(주)의 주택임대보증을 받을 수 없음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예시 : 102동 301호에 당첨된 홍길동 → 20301홍길동)

▣ 계약시 구비사항

구 분	구비사항
정당당첨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 접수증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2통(용도: 추후 자필기재) 또는 서명인증서 2통(외국인에 한함), 계약자의 인감도장 • 무통장 입금증 • 본인 확인 및 신청자격 확인서류(신청순위, 거주 지역 내용 확인서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 주민등록등·초본 각 1통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소 신고사실증명서) •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 청약통장순위확인서(청약 통장가입은행 창구 및 아파트 투유, 국민은행 홈페이지 발급)
제3자 대리 계약시 추가 구비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하며(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서류 추가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아파트 계약 위임용) 1통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및 인장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주택전시관에 비치)

※ 상기 제 증명서류는 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단, 주민등록등본은 최초 입차인 모집공고일(2011. 2. 9)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시 외국인은 공급 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조건 등

- 입차인으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 신청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함
- 임대주택 입차인으로 선정된 후 입차권을 전대 또는 양도, 양수하였을 경우에는 당첨 무효, 해약 및 퇴거 조치함
- 임대주택은 임대차 기간 동안 전매(매매, 증여, 임대, 기타 권리의 변동)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상속인 경우 제외) 및 전대(그 권리의 양도를 포함)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체결된 계약은 취소됨(단, 임대주택법 제19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음)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익을 제기할 수 없음
- 임대차 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관한 사항은 임대인과 입차인(당첨자)간의 임대차 계약서 체결조건을 준용함

▣ 중도금 대출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첨자에게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임

▣ 입차인(입주자) 사전점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6항 14의 2에 의한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입주개시 전 임대사업자가 지정하는 날에 입주자 사전방문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점검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함

▣ 입주예정월 : 2013년 6월 예정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 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판교택지개발지구 기반시설의 미비 및 부지조성공사 지연시 입주 예정월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독서실, 경로당, 유아놀이방, 주민회의실 등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됨

▣ 기타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공급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단, 인터넷 청약의 경우 신청 당일 접수시간 내에서만 수정, 취소가 가능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차인 모집공고상[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람
 - ※ 평형 환산법 = 형별면적(㎡) × 0.3025 또는 형별면적(㎡) ÷ 3.3058
- 주택형 표기방식이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당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입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에는 당첨무효, 해약 및 퇴거 조치됨
- 준공 이후 발코니 구조변경을 할 경우 개별세대로 행위신고(허가)절차를 득하여야 하고, 사전허가 없이 불법구조 변경하여 확장하는 행위는 건축법, 주택법을 위반하는 사항으로 입주후 관계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구조 변경 시 엄중한 처벌과 원상복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람
- 상기 세대당 공급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 부득이한 경우에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에서 다소 증감이 있으며, 대지면적의 경우 설계변경이 필요하면 수분양자의 동의 없이 경미한 설계변경으로 처리하고,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주거공용면적은 주택형별로 구분 배분되었음

- 사업지 주변 여건에 따라 항공기 및 지하철, 도로 등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옥외공간에 설치되는 조경시설, 외부시설물의 종류 및 위치에 차이가 있으며, 일부 시설물의 설치에 따라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제공기기 및 마감재도 변동될 수 있음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단, 건축법 제16조 제2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각종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각종 평가심의 및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공급안내서,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 시설(학교, 지하철, 도로망, 공공청사,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등)은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음
- 본 아파트 시공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지 주변 건축물의 신축 및 개조 등의 건축행위로 인해 조망, 일조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당 사업과는 무관한 내용임(본 아파트 부지 북측에 주상복합아파트가 신축중임)
- 부지 북측에 20M 도로와 서측의 36M도로에 2면이 접해 있고, 남측 보행자 근린공원에 육교가 설치되어 있어 교통소음 및 시각적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상복합건물의 특성상 별도의 방음벽을 설치 할 수 없음
- 일부세대는 공사시행 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음
- 현장여건, 주변개발 등 사업부지 및 주변현황의 확인에 대한 책임은 청약 및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현재의 개발계획은 해당관청 및 민간개발사업자의 사정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상가 및 각종 시설물의 외부색채, 경관 및 야간조명, 외부입면계획, 옥상, 조형구조물, 세부식재계획은 건축심의를 따른 것으로 추후 관계기관과의 협의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시 임대주택에 대해 분양전환 이전까지 제한물권설정이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부기등기신청 예정임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일정한 보호를 받게 됨
- 임대무기기간이 경과한 후 분양전환 하는 경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 함
- 소유권보존등기는 분양전환 후 가능하며 분양전환에 따른 개별 소유권 이전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함
- 소유권보존등기 전 가등기 또는 전세권 설정 등 일련의 행위가 필요할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함
- 단지 내 상업시설은 입주민의 공동소유가 아닌 별도 분양시설이며,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대지는 아파트와 상가 입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며,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함
- 상업시설 등은 추후 설계변경에 의하여 규모 및 형태, 색채가 변경될 수 있음
- 주민공용시설 및 상업시설은 입주자 및 임차인의 목적에 따라 상이하게 운영될 수 있음
- 주택법 제42조 제2항에 의거하여 주택 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는 불가함
- 각동번호 및 세대 타입은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입주시 본 공고의 명칭과 상이 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 시공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계약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에 적용된 경관조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 부담이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건물 외관 구성상 일부 세대의 발코니, 외벽 등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음
- 건축물 구조물 외관에 브랜드용 광고 및 조명이 설치될 수 있음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이 부과됨
- 판교택지개발지구 토지이용계획도에는 변전소(도면기호 : 변), 가스공급시설(가), 집단에너지공급시설(집), 납골시설(납), 하수처리장(하), 우수중계 펌프장(오), 쓰레기소각장(소), 쓰레기자동집하시설(Tm),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 통신시설 예정부지 등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함
- 용인~서울(구 영덕~양재)간 도로는 유료도로로서 판교 입주민도 동 도로 이용시 도로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함
- 본 사업부지는 시행위탁자 「(주)엠디엠」, 수탁자 「한국자산신탁(주)」 간에 토지신탁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신탁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는 경우에 임대인의 권리 및 의무는 자동으로 「(주)엠디엠」 또는 「(주)엠디엠」이 지정하는 자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귀속)되며, 당첨자(입주예정자)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임을 인지하시기 바람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신청자격, 임차인 선정방법 및 모집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규에 따름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설치공간만 제공되며,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집기, 비품, 운영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향후 시설 증설 및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동일한 청약예금 등으로 공급신청서를 발급받아 당첨일 이전에 타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되었을 경우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하며, 청약취소는 불가함
- 계약 체결 후 부득이 해약하게 되는 경우에는 계약 시 계약조항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계약자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또는 대출금 감액시 납부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부족금액을 직접 납부하여야 함
- 대한주택보증(주)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단지 내 상업시설의 준공 및 입주시기는 아파트의 입주시기와 다를 수 있음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및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임
-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주택전시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 지구 여건

- 본 지구의 토지이용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은 지구계획(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지구 내 조성예정인 성남판교 복합단지 PF사업(가칭 알파돔 시티)은 추후 택지조성계획 및 관계기관의 변경 요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지 남측에 위치한 보행자 근린공원으로의 육교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본 지구 내 조성예정인 신분당선 판교역사(가칭)는 임차인 모집공고일 현재 중심상업단지 내에 건설계획이나 추후 택지조성계획의 변경 및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판교택지개발지구의 도로체계, 신호체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기반시설은 국가기관, 지자체 등에서 설치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고,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는 귀책사유가 없음

- 본 지구 인접지역에 서울공항이 위치하여 이로 인한 항공기 소음 및 전파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성남 판교지구에 하수처리장, 쓰레기소각장, 장묘공원 등이 설치됨과 아울러 기타 본 사업지 주변여건 사항 등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당첨자(입주예정자)는 추후 이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본 아파트는 발코니 확장형을 기본으로 공급하며, 이에 대하여 설계변경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샷시의 위치, 크기 및 사양은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전 세대는 안방을 제외하고 발코니 확장상태로 공급되며, 발코니 확장부위에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샷시 유리표면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사이버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견본주택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자재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이버 견본주택 및 인쇄물(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이버 견본주택, 팜플렛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며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 사이버 견본주택에 적용된 자재 중 성능향상을 위하여 설치물의 변경으로 형태 및 재질이 변경될 수 있음
- 마감자재의 내용은 주택형별, Type별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제반 홍보물의 면적 및 세부내용은 인허가 과정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은 B type만 개설했으며, A,C type 마감수준은 B type에 준하고, 타입별로 일부 마감자재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 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이 가구 설치공간의 폭, 높이, 길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 및 도서에서 이를 확인하고 이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각 세대의 현관 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로 인하여 가려지는 천장 및 가구윗면 및 바닥과 욕실의 욕조의 바닥과 윗면, 거울윗면 등에는 별도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거실의 아트월 설치 및 복도 등에 벽지 외의 두께가 있는 마감재의 마감으로 인하여 안목길이가 줄어들 수 있음
- 수전이 설치되는 미확장 발코니를 제외하고 확장된 발코니에는 별도의 급, 배수 설비가 시공되지 않음
단, 수전설치 미확장 발코니(안방발코니)의 벽은 경량벽체(석고보드)로 시공되오니 물에 취약하여 물에 닿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상가 외부마감 지상1~2층은 칼라복층유리이며, 주거동 외부마감 지상3~5층은 메탈릭 페인트, 지상4~20층은 실리콘수지 마감으로 시공됨
- 천연자재(무늬목, 천연석재)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함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람

- 102동 동측 3층부에 냉각탑이 설치되어 이에 면한 세대의 경우 진동 소음 및 시각적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건물은 상업시설과 혼재되어 있어, 상 행위로 인한 외부인과의 동선, 소음, 야간 조명등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세대 중 인접 동 및 인접 단지에 의한 시각적 간섭 발생이 가능함
- 본 건물 주거부분은 지역난방이 공급되며, 냉방은 개별 냉방임
- 지상1층의 진출입로는 상가용 차량 진출입로와 공동으로 사용됨
- 상가로 인한 대기주차가 있을 수 있으며 동선의 혼선이 있을 수 있음
-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부지 북동측에 진, 출입로가 분리되어 있고, 지하2층 및 지하3층 일부가 비주거용 주차장이며, 지하3층 일부 및 지하4층은 주거용 주차장으로 구분되어 있음
- 단지 내, 외부의 차선 및 교차로 횡단보도 자전거도로 보도 등은 교통영향평가 및 건축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서 임의로 재조정할 수 없음
- 판매시설 입점 업체는 미확정이며, 입점업종과 관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101동 301호,302호 세대일부 및 403호, 404호 하부는 필로티 구조로 세대 하부가 외기에 면함
- 3층 바닥에 옥외놀이터 및 부대복리시설, 주민휴게시설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한 소음, 시각적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어린이 놀이터 및 옥외 정원 등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세대별 현관은 인접세대와 마주보는 구조로 설치되어 출입시 시각적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건물은 기동식 구조로 세대내부에 기동이 노출될 수 있으며, 창호 설치폭이 제한될 수 있음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청약 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층 기계실 및 지하주차장 환기 급, 배기타워와 정압실, 한전패스 스위치 등은 건물구성요소로서 시야간섭 및 소음 등이 야기되어 생활의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는 관계도서를 참조하시고, 향후 환경개선을 위하여 위치가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 쓰레기 자동 이동설비에 의한 쓰레기 집하장은 부지 남동측 지상1층에 2개소(공동주택 1개소, 비주거 1개소) 설치되며, 비주거와 동일 공간에서 사용함
- 공동주택 재활용 창고(분리수거공간)는 지하2층에 설치됨
- 건물 외부 일부 도시가스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전기 및 통신맨홀 등의 인입위치는 KEPCO(구 한국전력공사)와의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가구소품과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음
-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상업시설 등의 단지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가로등, 경관조명 등 공용시설 조명과 상가조명에 의해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건물 형태 및 위치에 따라 외풍으로 인한 소음이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내 건립세대에 설치된 디스플레이, 전자제품, 전시용품 등은 제공되지 않음
- 101동 A type과 102동 B type는 거실의 창호가 서로 마주보고 있어 시각적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은 분양후 일정기간 공개후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한 후 임의로 철거할 수 있음
- 당 사업부지 내에는 입주자 및 외부 지역주민이 사용 가능한 공개공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불특정 다수인의 출입통제 또는 통제를 위한 구조물 설치를 할 수 없음
- 주택감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도배 조경, 도장, 기타 경미한 공사에 대해서는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일 전에 사전점검을 할 수 있고,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요령”을 따르며, 현장에 대하여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을 요구할 수 없음
- 외부창호 부속일체 및 크기, 간격, 디자인, 프레임, 사이즈, 유리 두께 등은 외부입면 계획에 따라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 시설물의 마감재로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 도서에 준함
- 당 아파트는 RC구조로 설계되었고, 세대내 실간벽은 경량벽체로 시공되어 일반 벽식구조 아파트와 비교하여 소음 및 충격음 전달이 다를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지하공사 공법은 토질 등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세대 내, 외 및 공용부분 시설물 등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 다른 임대/분양아파트(주상복합 포함)의 마감사양, 부대시설, 조경, 기타 설계내용 및 계약조건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또는 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시설, 조경의 설치 및 교체 변경, 계약조건 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 대피공간의 출입문은 법적기준에 적합하도록 철재 방화문으로 설치되며 향 후 입주 후에도 개별적으로 이를 제거 또는 임의변경 할 수 없음
- 평면의 모든 치수는 벽체중심선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나, 아파트 단위세대 도면은 안목치수를 적용함
- 모형 및 카달로그 등에 표현된 장애인 점형블럭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도로, 서비스도로 및 보도 등의 경사도는 주변도로 및 인접대지의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표시된 우수수 배관의 위치는 실제 시공시 이동될 수 있음
- 엘리베이터와 면하거나 또는 인접한 실은 엘리베이터의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 될 수 있음
- 지하1층은 문화 및 집회시설, 연회장, 식음시설 등이 입점할 예정이고, 이로 인한 소음 및 시각적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대지 동측에 선큰가든이 설치되며, 이로 인한 소음, 동선혼재 등이 있을 수 있음
- 상가 동측(후면부) 중앙로 및 공개공지는 24시간 개방통로이며, 이로 인한 소음, 동선혼재 등이 있을 수 있음
- 외부 시설물 가로등, 가로수 등은 공동주택과 비주거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이며 공동으로 관리비를 정산함

▣ 감리자 및 감리금액

(금액단위 : 원/ VAT 별도)

구 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통신감리	소방감리
회사명	(주)건축사사무소 건원엔지니어링			
감리금액	1,000,000,000			

▣ 본 아파트는 대한주택보증(주)의 주택임대보증을 득한 아파트임(임차인 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검사 포함)까지)

▣ 대한주택보증(주)의 보증 주요내용

(금액단위 : 원)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01282011-102-0000100	60,912,000,000	임차인 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검사포함)까지

▣ 대한주택보증(주)의 보증약관 중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 임대보증금 등의 납부

- 보증회사는 주택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임대차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임대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책임을 부담함
-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임차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 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임차인모집공고 전에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임대차 보증금
 4. 보증채권자가 임차인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임대보증금납부계좌(임차인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임대보증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임대보증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임대보증금의 납부증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6. 보증채권자가 임차인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임대보증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7. 보증채권자가 주택 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임대보증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임대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임대보증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전에 주택 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보증금
 12. 주채무자가 임차인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임차인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임대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임대보증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임대보증금
- 보증회사가 임대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임대보증금 및 임대보증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함(단, 임대보증금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함)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임대보증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임차인은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대한주택보증(주)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사업주체	한국자산신탁(주) (임대사업자 등록번호 : 2002-강남구-임대사업자-2179)
시공회사	(주)대우건설(주택건설 사업자등록번호 : 서울특별시-주택2003-009)

▣ 견본주택 사이버모델하우스 : http://www.prugio.com/HOME/2011/pangyo_prugioworldmark

▣ 주택전시관 위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53 주택공원전시관 2층

▣ 분양문의 : ☎ 031-711-3200 (분양사무소)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분양사무실 또는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